



해양수산부
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
www.nfqs.go.kr

다시 도약하는
대한민국 함께 잘사는
국민의 나라

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표시에

가리비 · 우렁쉥이 ·
전복 · 방어 · 부세 가
추가되었습니다.



가리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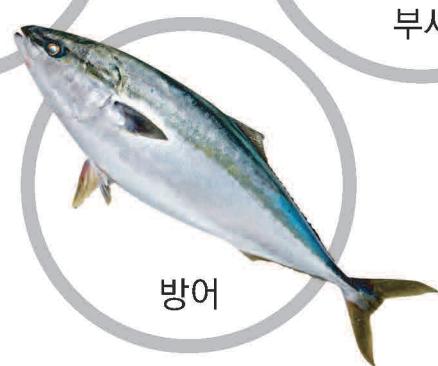
전복



부세



우렁쉥이
(멍게)



방어

2023년 7월 1일부터 확대 시행



현재 시행 중인 15가지 수산물

넙치, 조피볼락, 참돔, 미꾸라지, 뱀장어, 낙지, 고등어, 갈치, 참조기, 오징어,
꽃게, 명태(황태, 북어 등 건조한 것은 제외), 다랑어, 아귀, 주꾸미

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도란?



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제도

① 수산물 원산지 표시 대상 및 방법

생산·유통·판매자

표시 대상	국산 수산물	원양산 수산물	수입 수산물	수산물 가공품
표시 방법	국산, 국내산, 연근해산	원양산 또는 원양산 (해역명)	국가명 (통관 시 원산지)	사용된 원료의 원산지

※ 식염도 수산물에 단순가염, 염장 또는 염수장한 경우 원산지 표시대상

음식점

표시 대상	넙치, 조피불락, 참돔, 미꾸라지, 범장어, 낙지, 고등어, 갈치, 명태(황태, 북어 등 건조한 것은 제외), 참조기, 오징어, 꽃게, 다랑어, 아귀, 주꾸미, 가리비, 우렁쉥이, 전복, 방어, 부세(해당 수산물 가공품을 포함)	조리하여 판매·제공하기 위하여 수족관 등에 보관·진열하는 살아있는 수산물
표시 방법	메뉴판 및 게시판에 표시 또는 일괄 원산지표시판으로 표시 • 원산지표시판(29cm×42cm 이상, 글자 60 포인트) • 게시판 옆 또는 아래, 게시판 없을 시 업소 출입구 정면에 부착 • 수산물가공품 사용시 가공품에 표시된 원산지를 표시 (단, 원재료가 복합원재료인 경우 표시 생략)	동일 어종의 경우 원산지별로 섞이지 않도록 구획하여 뜰말 또는 안내표시판 (글자 30포인트 이상)으로 표시(원산지가 같은 경우 일괄표시 가능)

②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자 처벌

미표기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는 행위

- 생산·유통·판매자 : 5만원 이상 1,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
- 음식점 : 품목별 1차 30만원, 2차 60만원, 3차 100만원 과태료 부과



표기방법 위반 원산지 표기방법 위반행위

- 미표시 과태료 부과금액의 1/2 금액 부과

거짓표기 원산지를 거짓, 혼동 또는 위장표기 행위

-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(병과가능)
- 과징금 : 2년간 2회 이상 적발 시 위반 판매금액의 5배(최고 3억원)까지
- 형량하한제 : 5년 이내 다시 거짓표시 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

수산물 원산지 신고 및 문의 1899-2112 |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최대 1천만원

카카오톡 신고는 카카오톡에서 **수산물원산지표시** 채널 추가